

제429회 국회  
(정기회)

#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2일(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1)
- 현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6)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7)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5)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9)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7)
- 현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3)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1)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1)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7)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6)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9)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3)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4)

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4)
  27.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3)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4)
  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0)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3)
  31. 국회에서의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9)
  32.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 .....	3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1) .....	3
3. 현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6) .....	3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7) .....	4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4) .....	4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7) .....	4
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4) .....	4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5) .....	4
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9) .....	4
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1) .....	4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7) .....	4
12. 현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3) .....	4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7) .....	4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2) .....	4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1) .....	4
1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1) .....	4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7) .....	4
18. 국회에서의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2) .....	4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6) .....	4
20. 국회에서의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9) .....	4
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3) .....	4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7) .....	4
2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7) .....	4
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3) .....	4
2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4)	

.....	4
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4)	4
27.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3)	4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4)	4
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0)	4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3)	4
3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9)	4
32.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7

---

(14시27분 개의)

○위원장 김병기 의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

○위원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문진석 간사님과 유상범 간사님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단서에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위원장님, 국정감사 정기회 안건도 의결이 됐으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기 이것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장식 위원 하고요?

○위원장 김병기 예.

○신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

###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1)

### 3.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6)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7)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4)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7)
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4)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5)
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9)
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1)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7)
12.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3)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7)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2)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1)
1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1)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7)
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2)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6)
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9)
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3)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7)
2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7)
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3)
2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4)
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4)
27.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3)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4)
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0)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3)
3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9)

(14시29분)

○위원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오셨습니까?

○**김성희 의원** 예.

○**위원장 김병기**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의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특례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87년 이후 우리 헌법은 38년째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불법계엄에 맞서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순식간에 국회 앞으로 국민들이 모여서 불의를 심판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헌법은 여전히 신문판매원의 호외로 계엄 뉴스를 듣고 대자보와 전단을 돌려 가며 불의에 항거했던 시절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담아야 할 헌법이 이토록 오랫동안 멈춰 있던 건 개헌이 너무 어렵고 거창하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개헌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생각은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로 귀결되었고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본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개헌을 거대한 이벤트가 아닌 4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검진처럼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항상 열어 두고 4년마다 개헌 제안안을 만들어서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길을 여는 법안입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개헌에 참여하시고 토론하실 수 있는 헌법개정 청원 절차도 담았습니다. 진정 큰 변화는 꾸준한 대화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개헌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한 본 법안이 그 변화의 문을 열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헌법이 특정 세력이나 집단의 정치도구가 아니라 국민 곁에서 국민의 일상을 담아내는 살아 있는 헌법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의원** 존경하는 김병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25인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국회 권한 강화, 권력분립 등 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적 참여가 제한받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며 권리분립 원칙이 미흡하게 작동하는 등의 한계도 뚜렷합니다.

낡은 헌법이 문제입니다. 변화된 시대, 선진국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맞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헌 당위성은 크지만 개헌은 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정당만이 개헌

에 참여한다면 정당성도 줄고 개헌 성공도 어렵습니다. 개헌 절차를 국민이 주도하도록 해야 정당성도 커지고 성공 확률도 높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 소속으로 범국민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협의회에서 헌법개정안 기초안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안 기초안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국회는 금년 12월 31일까지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의 기초안을 반영한 개헌 및 정치개혁안을 완성합니다. 세 번째, 내년 2026년 3월 31일까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특별위원회가 개정안 의결을 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는 이 법은 절차와 일정을 모두 규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헌 국민투표를 한 번만이라도 해 보고 싶다는 국민이 많습니다. 주권자의 주권 행사의지가 그만큼 큽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에 개헌 국민투표를 맞추려면 그리고 국민 참여를 위해서는 제안드리는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낡은 헌법도 족쇄이지만 개헌은 어렵다는 의식도 족쇄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개헌절차법은 절차를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족쇄를 푸는 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의의를 깊이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아 의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지아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명령, 그 밖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인 보좌직원들이 부당한 처우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례에서 관계 우위를 남용한 부당한 지시가 반복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지난 여성가족부장관 청문회 과정에서도 큰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보좌직원은 입법·정책 개발 등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전반을 함께하는 동료이자 동반자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인권 보호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국민 앞에서 법과 제도를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명령,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며 국회의

원과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보좌직원들이 보다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회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의원의 입법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기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관례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체토론을 생략하되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향후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1항까지 30건의 안건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32.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4시39분)

○위원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32항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문진석 간사님, 유상범 간사님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올해 10월 31일로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과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국회운영개선소위에 계류 중인 무기명투표의 전자투표 원칙화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 등과 직접 관련하여서 이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회운영개선소위로 바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그러셨지요?

○**신장식 위원** 서미화 위원님 먼저……

○**박수민 위원** 저도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기** 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도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세력을 단죄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헌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목소리가 국회와 특검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특검이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내란공범 인권위원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란 동력 기구입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윤석열의 방어 안전을 졸속 통과시키며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난 7월 시민사회단체는 안창호·김용원·한석훈·이충상·강정혜·이한별, 6명의 윤석열 방어 안전을 통과시킨 인권위원들을 내란특검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는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그사이에 내란의 증거는 사라지고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100건이 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을 응호하기 위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인권위원회를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고 내란공범들을 국회에 세워 내란 종식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열리는 법안소위 또한 인권위 정상화의 신호탄이 되어야 됩니다. 인권위 관련법이 그냥 상정이 아니라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간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이 33건이나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 열린 지 1년 반이 되어 가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개정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반인권 인사인 안창호 위원장을 탄핵시키고 인권위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인권위원회 내란공범들은 보란듯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가를 도발하고 제2의 내란에 벼금가는 음모를 작당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인권위 내란특검 수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인권위 업무보고와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인권위법 논의도 적극적으로, 상정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먼저 하고 하시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김병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박수민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요, 순서를……

○윤종오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하세요.

○신장식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권위원회법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안건 상정은 됐지만 사실 내일 운영개선소위에는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아마 서미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빠르게…… 인권위원회 안창호·김용원·이충상·한석훈·강정혜·이한별 위원 이런 분들 내란세력 비호와 혐오 확산에 매진해 오고 계시는데요. 인권위 구성 자체를 인권 전문성 가진 분들로 바꿔야 된다.

왜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가 특별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11월 초에는 등급 보류 내지는 강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위원을 인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전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아마 대망신을 11월 초에 대한민국이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개선소위에서 빨리 이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개선소위 문진석 위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꼭 드리고요.

○문진석 위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신장식 위원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큰일 나게 생겼어요. 11월 달에 세계인권기구에서 우리 등급 보류되거나 낮아지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로?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국정감사 앞두고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작년 운영위원회에서 국감 저와 함께했던 분 지금 서미화 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요. 작년 운영위 국감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2024년 11월 1일 날 스크린골프 시설에 대해서 윤건영 위원이 물었을 때 ‘전혀 본 적 없습니다’,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사우나나 스크린골프 없고요’, 명태균 씨 녹취 나왔을 때 ‘덕담 수준으로 이야기하신 거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스크린골프 시설 없다고 부정하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증인선서까지 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재순 총무비서관, 소위 서희건설에서 받았던 나토 3종 세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두 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했습니다’. 국감에서 증인선서하고 이런 발언 했습니다.

이 발언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또 국감을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또 와서 증인선서하고 거짓말해도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용납하겠다라는 의미로밖에 그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진석, 김성훈, 윤재순 그리고 조태용, 김태효, 임기훈 이런 사람들 나와서 운영위원회에서 다 거짓말하고 갔어요. 반드시 증감법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진석 수석님, 증감법 고발에 동의하시지요?

○**문진석 위원** 예.

○**신장식 위원**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이걸 동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 처리…… 증감법 고발 안 해 놓고 국감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짓말 대잔치 할 건데?

.....

○**위원장 김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위를 올해 처음 해 보는데 약간 이례적이고 특징적인 게 느껴져서 주의 환기와 또 토론을 위해서 제안드려 봅니다.

결산 심사가 상임위 중에 없는 데가 운영위 같아서 제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모든 상임위가 소관 기관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예산을 하고 예결위를 하는데 운영위에서 통 소식이 없어서 제가 좀 탐문을 해 보니까 관행상 어찌고저찌고하는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저는 조금, 처음 참석한 사람이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은 모든 상임위가 다 해야 되고 그게 예결위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지금 아직 예결산이 국회 다 통과되는 전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짜서라도 결산은 하고 또 예산도 하고 그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조금, 기존에 왜 결산이 안 됐는지 혹시 발언 주실 수 있으면 한번 듣고 싶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병기**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이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유불리 이제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냥, 결산을 안 하면 상임위의 의무상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진석 위원** 당내에서 얘기하세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얘기하시면 되지.

○**박수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말씀을 하는데 말을 자르고 그래.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 말씀하세요.

○**문진석 위원** 전체회의에서 얘기하지 말고 당내에서 얘기해서 간사님이 얘기하면 되지.

○**박수민 위원** 아니, 전체 주의 환기를 해야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병기** 양당 간사께서 협의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윤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오 위원** 아까 서미화 위원께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요 제가 발의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실제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일반 국민도 하지 말아야 할 반지성주의적 주장을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계속해 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 안창호 위원장의 비상식적인 행태와 함께 인권위원들의 임명 단계에서부터 부적합한 인물들을 걸러 내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야 되고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더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송언석 위원**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김병기** 예, 송언석 위원님.

○**송언석 위원**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잘 들었다가 적절하게 조치하고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법 제23조에 보면 3항에 ‘국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조의 4항에는 ‘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여기서 단서 규정에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고 다음 회기에 운영위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회기라고 하는 것은 정기회 또는 그 전의 임시회, 여러 가지 회기별로 돼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예.

○**송언석 위원** 그러면 단서 규정을 반대해석을 해 보면 본문에 있는 ‘운영위원회 동의와 의장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비금을 그때그때 지출할 때마다 사무총장은 운영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거라고 보는데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예.

○**송언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운영위 여기 와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예비금 지출하는 것 운영위에서 의결한 것도 못 들었고 지출했다라고 하는 보고도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의 예비금 금년에 한 번도 지출 안 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그것은 사무처에 문의를 한번 해 봄야 될 것 같고요. 통상은 관례적으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 관례가 이 법 규정하고 맞나요?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정확하게 합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무총장이 관리하는 예비금에 대해서 운영위에 한번도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다 지출하고 지금 수석이 답변한 대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적당할 때 운영위에 보고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정면으로 국회법 23조 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수석이 사무총장과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기** 더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보좌직원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

○**출석 위원(21인)**

강선영 김남근 김병기 김영배 김은혜 문금주 문진석 박수민 박충권 백승아  
서미화 송언석 신장식 유상범 윤종오 이기현 이훈기 조인철 조지연 채현일  
허영

○**첨가 위원(5인)**

곽규택 박상혁 박성훈 전진숙 최수진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김성희 한지아 황운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최남근

【보고사항】

○**의안 회부**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2025. 7. 28.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3)

7월 29일 회부됨

**국회의원(강대식 등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

(2025. 7. 30. 박찬대 의원 등 45인 발의)(의안번호 2211837)

7월 31일 회부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7)

**국회의원(박찬대 등 10인) 제명 촉구 결의안**

(2025. 7. 31. 주진우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11901)

이상 2건 8월 1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1)

이상 2건 8월 7일 회부됨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1)

8월 12일 회부됨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7)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2)

이상 2건 8월 13일 회부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6)

8월 18일 회부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9)

8월 20일 회부됨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3)

8월 22일 회부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7)

8월 26일 회부됨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3)

이상 2건 8월 28일 회부됨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4)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4)

이상 2건 8월 29일 회부됨

###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

(2025. 8. 29.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4)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0)

이상 3건 9월 1일 회부됨

## **2026년도 예산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3)

이상 2건 9월 4일 회부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9)

9월 5일 회부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9월 12일 회부됨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2.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0)

9월 15일 회부됨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1)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2)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4)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1)

이상 6건 9월 16일 회부됨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6)

9월 17일 회부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2)

9월 18일 회부됨

## **○관련의안 회부**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8)

8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6)

9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 청원 회부**

#####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책임 강화와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5. 9. 11. 정지웅 외 2인으로부터 천하람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19)

9월 11일 회부됨

#### **○ 요청서 회부**

##### **제428회 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5. 8. 20. 의장 제의)

8월 20일 회부됨

##### **제429회 국회(정기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5. 9. 1. 의장 제의)

9월 1일 회부됨

##### **국회미래연구원 정관 변경 인가 동의 요청**

(2025. 9. 17. 의장 제의)

9월 17일 회부됨

#### **○ 계획서 송부**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2025년 재정 관련 자료**

(이상 2건 2025. 9. 3.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4일 송부됨

#### **○ 보고서 송부**

#####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5. 9. 3. 정부 제출)

9월 4일 송부됨